

일시 : 2016.2.24.(수) 15:30
장소 : 자원봉사센터 상담실(구청 7층)

- 2016년 2월 (제33차) -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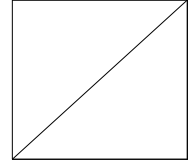
성북구 인권위원회

목 차

1	제2016-1호 심의사항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권영향평가 결과	3
2	보고사항	제32차 인권위원회 개최결과	14
3	보고사항	1) 2016 상반기 복지시설 종사자·사회적 경제 주체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계획	16
		2) 인권영화 ‘귀향’ 직원 관람 계획	17
		3) 9기 성북구 주민인권학교(안)	17
		4) 2016년 「인권도시 성북」 사업계획	18

【공개/비공개】

성 북 구
인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6-1호
보 고 연 월 일	2016. 2. 24.(수)

심
의
사
향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 권 영 향 평 가 결 과**

보고자 | 성북구 감사담당관(인권센터)

목 차

1	서울특별시 성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 조례	3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1] 서울특별시 성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검진, 검진비, 검진기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 지원내용(안 제4조 ~ 제6조)

다.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안 제7조)

라.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8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마. 지역협의체의 기능(안 제9조)

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10조)

사. 환수조치 등(안 제11조)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91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의약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 · 상담지원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1. 서울특별시 성북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 계획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기획예산과
		협 의기간	2015. 12. 28. ~ 2016. 01. 21.
	입법예고	2016. 01. 28.부터 2016. 02. 18.까지(21일간 예정)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6년 02월(예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조례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의약과	지방간호주 사보	강일선	6133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6-3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6. 2. 1.)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p>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8조 제2항]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 ‘지역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2/3를 넘지 아니한다’는 성별 할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p> <p>[비밀누설의 금지] 조항 마련 ○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될 수 있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상담 지원을 받는 자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p>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우리구 문화예술 기반의 전문성을 부양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추진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발전이 재단운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단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연임규정 개정(안 제8조제7항)

○ (현행)임기 2년, 1회 연임 ⇒ (개정후)임기 2년, 1년 단위로 연임

나. 상임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를 고려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절차 규정(안 제8조제7항 단서신설)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95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문화체육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6. 2. 25부터 2016. 3. 16까지(20일간 예정)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6 . 3월	
	의회상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체육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김지은	2241-2608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문화재단의 운영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 추진
		② 아니오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6-4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6. 2. 23.)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제32차 인권위원회 개최결과

1. 개최개요

- 일 시 : 2015. 11. 24.(화) 15:00~17:30
- 장 소 : 성북배움터(구청 3층)
- 참석자 : 10명(김덕진, 김은영, 김한민, 박다혜, 박현숙, 배정학, 윤정섭, 이윤하, 최도용, 홍미리)
- 주요안건
 - 조례·규칙 제·개정안 4건 인권영향평가 심의
 - 장애인활동보조인 생활임금 적용 요청에 관한 구청장 면담 결과 보고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2. 회의결과

심의 및 결정사항

- 조례·규칙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심의 결과
 -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원안동의
 -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원안동의
 -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 권고결정(제32호)

인권위원회 권고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 * 주민 감시 또는 사생활 침해를 금지할 것
- * 마을공동체 복원에 중심을 두는 방식의 범죄예방디자인을 시행할 것
- * 디자인위원회에 인권과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포함시켜 인권친화적이며 공동체친화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것

- 장애인 활동 보조인 생활임금 적용 관련 구청장 면담 보고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 성북인권페스티벌 ‘성북구 인권동 366’ (안)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

(부서명 : 도시디자인과)

심의대상	심의결과	위원회 의견	수용여부	부서의견	비고
성북구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권고 결정	○ 주민 감시 또는 사생활 침해를 금지할 것		○ 본 조례에는 주민감시나 사생활 침해 관련 조항은 없음 - 다만,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시행시 방법용CCTV의 설치 및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고 있음.	
		○ 마을공동체 복원에 중심을 두는 방식의 범죄예방디자인을 시행할 것		○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시행시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복원이 사업의 중심이 되도록 시행하겠음.	
		○ 디자인위원회에 인권과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포함시켜 인권친화적이며 공동체친화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것		○ 현재 구성되어 운영중인 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회 재구성시 권고안을 반영하겠음. - 위원회 재구성 이전에 시행하는 사업은 인권과 마을공동체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 현 디자인위원회 위원 임기 : 2015.9.13.~2017.9.13.	

[2016년 상반기] 복지시설종사자 및 사회적경제 주체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10조(인권교육 실시)
- 구청장방침-2016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 <특별정책과제>

■ 교육계획

- 교육 일시 및 장소 : 2016. 3. 9(수), 14:00 ~ 18:00, 평생학습관 중강의실
- 교육 대상 : 성북구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종사자 등
- 교육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구분	시간	내용	강사	비고 (강사 프로필)
1강	14:00~16:00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참정권	김재왕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2강	16:00~18:00	사례 중심 참여 학습	김성연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교육신청

- 신청기간 : 2016. 2. 22(월) ~ 3. 4(금)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신청서(구 홈페이지) 제출
- 접수처 : 성북구청 인권센터(전화 02-2241-2194, 이메일 may-1@sb.go.kr)

■ 소요예산 : 총 1,100천원

- 강사료 : 600천원(300천원 ×2명×1회)
- 운영비 : 500천원(현수막, 포스터, 교재발간, 다과 등)

보고사항 3-2

인권영화 '귀향' 직원 관람 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10조(인권교육~~구실~~실시) 소녀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 관람계획

- 일시 및 장소 : 2016. 3. 7(월)~3.8(화) 16:00 ~ 18:00, 아리랑시네센터 3관
 ※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기념일
- 관람 대상 : 희망직원 200명(회당 100명)
- 영화 제목 : 귀향(鬼 郷 : Spirits' Homecoming, 2015), 조정래 감독



■ 소요예산 : 총800천원

- 관람료 : 800천원(400천원 ×100명×2회)

보고사항 3-3

9기 성북구 주민인권학교(안)

- 주 제 : 인권으로 생각하는 습관
- 일 시 : 2016. 4. 19 ~ 5. 10(매주 화, 저녁 7~9시, 총4강)
- 장 소 : 성북구청 3층 배움터
- 모집정원 : 50명(선착순)
- 강의일정

회차	일시	강의주제	강사
1강	4.19	인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꾸는 법	한인섭(서울대 법학교수)
2강	4.26	외모와 인권	서민(단국대 가생충학과 교수)
3강	5. 3	여성과 인권	소라미(공감 변호사)
4강	5.10	공부 중독	엄기호(인권연구소 창)

2016년 「인권도시 성북」 사업계획

인권도시 성북 성과지표

현황지표	성과지표	세부사업	추진지표	2016	2017	2018
- 우리 사회 인권의식 수준 : 4.31점(10점만점) - 인권의식 향상방안 · 인권교육 확대 : 44.8% · 인권센터 설치 : 25.6% · 주민참여 : 20.3% · 인권문화 조성 : 9.2% - 인권교육 필요성 체감도 : 7.67점(10점만점) · 매우필요 : 41.8% · 약간필요 : 30.1% - 인권교육 우선 대상자 · 공무원 : 45.7% · 교 사 : 35.1% · 복지시설종사자 : 27.0% · 학생/청소년 : 26.4%	- 인권도시 성북 인지도 향상	① 인권도시 역량강화	인권센터 기능강화	1	1	1
			인권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10	10	10
			인권실태조사	1	1	1
			인권전시관 조성	1	1	1
			인권백서 발간	1	-	1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2	2	2
	- 인권교육 활성화 · 참여자 수 · 만족도	② 인권교육 활성화	복지시설종사자·사회적경제주체 인권교육 실시	2	2	2
			주민인권학교 운영	2	2	2
			교사인권캠프 운영	1	1	1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확대	1	1	1
			대상정책 인권영향평가 실시	30	30	30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	2	2	2
- 인권영향평가 제도 정착	③ 인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인권영향평가 실시	1	1	1	
		2017년 세출예산(안) 인권영향평가 실시	1	1	1	

I. 추진 필요성

□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정책 시행 확대 추세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제정 권고 이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246개 중 77개 지자체 조례 제정(광역 17개 중 14개 제정, 2015. 8. 현재)
 - 서울 26개(광역 포함) 중 11개 자치구가 제정(제정율 42.3%)
 - 울산 6개(광역 포함), 광주 6개(광역 포함) 자치구 모두 제정(제정율 100%)
 - 대전 6개(광역 포함) 중 5개(제정율 83%), 부산 17개(광역 포함) 중 9개(제정율 52.9%) 제정
- 성북구, 서울시 최초로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위원회, 인권전담 부서 신설, 전국 최초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인권거버넌스 구축 등 인권도시의 적극적 운영 및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
 - 2013년 서울시 우수사례 70선 선정 및 한국매니페스토 공감행정분야 최우수 선정
 - 2014년 세계인권도시 포럼 특별회의 ‘인권실행의 모범사례’ 발표
 - 2015년 서대문인권포럼, 인권영향평가제를 바탕으로 한 인권기반 행정문화 조성 사례 발표

□ 인권제도화 전략 및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도입

- 지역 주민운동과 인권운동의 결합
 - 인권의식과 문화의 확산에 따른 지역 주민운동과 주민생활 밀착형 인권운동 결합
- 도시 문제(교통, 환경, 안전, 주거 등)등에 대한 인권적 대응
 - 국가 차원의 인권후퇴에 따른 아래/지방 차원의 대안적 움직임
- 인권제도화 전략 및 인권친화적 행정 기관 주도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도입
 - 주민 주체의 자력화를 통한 시민성의 회복, 사회적 연대와 지속가능한 인권 중심의 가치 공동체 실현, 이를 위한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체계 구축 등 인권제도화 전략의 필요성 증대
 - 인권친화적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행정 기관 주도의 인권에 기반한 행정 추진

□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도시의 패러다임 등장 및 인권도시간 연대 활발

-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최종보고서 보고
 - 한국 정부보고서에 서울시를 비롯하여 충남과 성북구의 인권도시 추진 언급
 - 유엔총회에서는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발표, 그 중 11번 목표로 “도시“에 대한 독립 목표가 설정되는 등 인권 도시에 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 추세
 -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 정책을 책임지는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인권자문위원회 차원의 “guiding principles” (처리원칙) 제정 필요성 논의
- 도시간 인권교류와 연대 확산
 - 광주 세계인권도시 포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ULG) 등 도시간 인권교류와 연대 확산
 - 유럽, 브라질, 바르셀로나,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차원의 인권도시 확산

II. 비전 및 목표 (전략 개념도)



Ⅲ. 그간 추진실적

□ 단계적 추진과 총체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권증진구조 창출

○ 전국 최초, 인권도시추진성북 추진위원회 구성

- 구 성 : 인권전문가 및 지역인권단체활동가 13인

- 역 할 : 인권도시 성북 추진을 위한 발전과 과제 워크숍 개최, 성북구 인권증진조례(안) 제시

○ 서울 최초, 인권전담 부서 신설(2012. 1.1.) 및 인권조례 제정(2012. 7.19)

- 내 용 : 성북구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 설치, 인권교육의무화 및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 경 과 : 인권팀 신설(2012.1), 수요거리 캠페인(5회), 주민설명회(총2회), 공청회 개최, 성북구인권위원회 출범(2012. 9. 26)

□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 5대 대상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제도의 정착화 단계

- 목 적 :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그 추진과정이나 추진결과가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인권적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 대 상 :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주민퇴거사업, 3년 이상 주기 계획, 세출예산 단위사업 및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 방 법 : 민관합동평가단 구성, 소관부서 자가진단 및 1차 설계도면, 2차 현장점검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의견 개선

- 내 용 : 접근성, 안전성, 친환경적 요소, 평등권, 차별적 내용 등 점검 및 개선

○ 전국 최초, 안암동 복합청사 인권청사 1호 건립

- 전국 최초로 청사 신축 초기 단계에서 인권건축 고려, 입찰제안시 기본설계에 인권개념 반영, 기술평가지 인권전문가 참여 및 인권관련 항목평가, 당선작 기본설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감리단 구성 및 인권

디자인 보완 등 청사의 준비, 설계 및 완공 등 전 과정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건립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 내용 :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으로 인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주민에 대한 권리침해를 최소화 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전국 최초로 시범실시
- 방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단 구성운영
- 성과 :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안 토론회 개최(2014. 8. 22), 재개발지역 관계자 면담, 결과에 따라 향후 퇴거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과제 도출

□ 인권교육 활성화 및 인권문화 확산

○ 공무원 인권교육 연2회 의무실시

- 아카데미(인권 전문가 강의) 운영, 인권영화 상영, 사이버인권교육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교육인원	216	1,822	1,097	1,392	950	5,477

○ 전국 최초, 주민인권학교 운영, 지역인권활동가(수료생) 261명 배출

- 인권이슈 및 분야별 인권강사 강의(기수별 4-6차시, 80% 교육참가시 수료증 발급)

연도	구분	일정	접수자/수료생
2012	1기	2012.04.19~05.24(매 주 목, 총6강)	63명/39명
	2기	2012.09.04~10.16(매 주 화, 총6강)	68명/31명
2013	3기	2013.04.04~05.09(매 주 목, 총6강)	64명/36명
	4기	2013.10.16.~11.20(매 주 목, 총6강)	50명/28명
2014	5기	2014.06.12.~07.03(매 주 목, 총4강)	71명/52명
	6기	2014.10.07.~10.28(매 주 목, 총4강)	42명/25명
2015	7기	2015.04.07.~04.28(매 주 화, 총4강)	44명/24명
	8기	2015.10.07.~10.28(매 주 수, 총4강)	42명/26명
합계			444명/261명

○ 복지시설, 사회적경제 종사자 인권교육 연2회 실시

연도	계	종합사회 복지관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기타 복지시설	기타
계	276명	57	28	78	26	11	26	31
2013	81명	22	8	9	11	5	12	14
2014	143명	29	11	67	13	5	10	8
2015	52명	6	9	6	11	6	4	10

○ 전국 최초, 교사인권캠프 운영

- 주제별 강의·모둠토론, 인권감수성키우기, 연극, 공연, 체험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의식고취(연1회/1박2일, 2013년부터 매년 진행)

연도	계	일시	장소	주제
2013	40명	2013.8.30.~31.	강원도 횡성 서초수련원	교사와 함께 하는 인권캠프
2014	40명	2014.8.29.~30.	충북 노곡리 평화공원	교사 평화와 인권의 현장에 가다
2015	40명	2015.9.11.~12.	도봉 숲속마을	학교와 성·청소년에게배우다

○ 인권문화 행사 개최

- 전국 최초,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박람회 개최(2012. 12. 10.~11.)
- 인권축제 개최(2013. 5. 3.~17.)
- 이주민영화제 지원(2014. 11. 8.~10.)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권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

○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인권위원회 구성

○ 전국 최초, 정릉천산책로 조성사업 등 주민참여 인권영향평가 추진

- 공공사업의 착수 전 주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설계도면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장애인, 아동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 안전 등의 점검 및 개선 조치 의견 제출

○ 전국 자치단체 최초, 분야별 ‘인권 열린토론회’ 개최(2012.9.3)

-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분야별 인권관련 정책제안 61건 사전접수, 4개 분야로 모듈별 토론, 단순 및 심층 선호도 조사 등 의견 수렴

○ 인권선언문 제정 및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 열린토론회’ (2013.4.26)

○ 기초자치단체 최초, 주민인권선언 제정(2013.12.10)

- 주민인권선언문 제정을 위한 공동추진단(구구의화구인권위원회) 발족(2012. 12. 10)
- 주민인권선언문 제정을 위한 주민참여단(135명) 위촉(2013. 3. 26)
- 성북구민의 날 기념, 성북 주민인권선언 초안 발표(2013. 5. 7)
- 성북주민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열린토론회(3회) 및 연석회의(2회) 개최(2013. 4~11)

□ 인권도시 역량 강화

○ 인권센터 설치

- 설치시기 : 2015. 1. 1.(장소 : 구청 8층 감사담당관 옆)
- 인력규모 : 4명(센터장, 직원3명)
- 업무내용 :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정책개발 및 집행, 교육

○ 인권센터 시민위원 위촉(총 13명)

○ 안암동인권청사 인권작품 설치 및 인권공모전 추진

○ 청소년노동인권 증진 활동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특성화고 4개교, 3학년 전체)
- 청소년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교육과정 운영 : 2015. 8월~11월
-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 추진

○ 인권축제 및 인권콘서트 추진

IV. 추진체계

1. 마을민주주의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체계

□ 인권센터 시민위원

- 위촉일 : 2015. 7. 27.
- 구 성 : 시민위원 13명(남4, 여9)
- 운 영 : 분기별 정례회 및 일상적인 모니터링 활동, 의견개선

2. 전문가 지원체계 구성운영

성북구인권위원회(2기)

○ 위촉일 : 2014. 9. 18.

○ 구 성 : 인권위원 16명(남9, 여8)

○ 운 영 : 매월 정례회, 인권영향평가 등 심의 및 권고

청소년 노동인권 기획자문회의

○ 구성일 : 2015. 6. 18.

○ 구 성 : 기획위원 12명(교사, 청소년단체, 인권강사, 인권센터 등)

○ 역 할 :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조례 등 기획 자문

교사인권캠프 기획단

○ 구성일 : 2013년 3월(매년 추진)

○ 구 성 : 교사, 인권강사 및 인권단체 활동가 등 교사인권캠프 기획 준비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 일 시 : 2015.7~12월

○ 구 성 : 건축가, 건축학과 교수,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 능 :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3. 유관기관 협조체계

- 서울시,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각 자치단체 인권부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청소년 및 인권단체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상적인 정보 공유 및 논의 실시

V. 2016년 추진계획

1. 인권도시 역량 강화

추진지표

추진 지표명	목표치		
	2016년	2017년	2018년
인권센터 기능 강화	1	1	1
인권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10	10	10
인권실태조사	1	1	1
인권전시관 조성	1	1	1
인권백서	1	-	1

□ 세부추진계획

1. 인권센터 기능강화

□ 인권센터 시민위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정례회 개최 : 분기별 정례모임 및 인권교육 특강 진행

○ 모니터링 활동 및 인권영향평가 수행

- 2016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모니터링

□ 인권침해 상담 진정 업무 및 인권정보 공유사업에 대한 기능강화

○ 온라인 상담 및 진정 업무 활성화 추진

○ 구청 홈페이지 ‘인권도시 성북’ 자료실 활성화를 통한 인권정보 공유

□ 사업비 : 5,096천원(인권센터 시민위원 수당)

2. 인권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 운영시기 : 매월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 위원구성 : 20명 이내(현재 16명, 위원장 공석)

□ 운영내용 : 자치법규 및 사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심의자문

※ 2016년 9월 : 제3기 성북구 인권위원회 구성 및 출범

□ 사업비 : 11,760천원(인권위원 수당)

3. 인권실태조사 실시(아동청소년 아동인권실태조사)

추진근거 : 인권조례 제6조

○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 전략 수립, 인권취약 집단의 인권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추진방법 : 공개입찰(과업 협상)에 의한 민간 위탁

추진일정

○ 2016. 1월~2월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16. 3월~4월 : 계약 추진

○ 2016. 5월~7월 : 실태조사 실시

○ 2016. 8월~9월 : 관련 정책 대안 개발 및 계획 수립

사업비 : 30,000천원

4. 인권전시관 조성

사업내용

○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신축된 안암동 인권청사의 다목적실을 활용하여 인권청사로서의 기능과 상징을 제고

○ 지역의 인권 및 문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미술, 사진, 인권이슈 및 역사, 인물, 영화 및 연극 공연, 인권교육 등이 상설적으로 가능한 인권 전시관 조성함으로써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인권청사로서의 기능 제고

○ 인권마켓·인권역사·인물이슈·인권도서·영화상영 등 상설전시, 인권기행 등 다양한 인권문화 사업 추진

설치장소 : 안암동 복합청사 4층 다목적실(42.79㎡)

기대효과

○ 인권청사로서의 기능 및 상징 제고

○ 지역의 인권 및 문화 자원 발굴 및 역량 제고

○ 상설적인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의식 고취 및 인권 문화 확산

○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자원, 인권을 연계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발굴

추진일정

- 2016. 1월~4월 인권전시관 조성 설계 및 공사
- 2016. 5월 기획행사 추진
- 2016. 6~8월 기획전시 추진
- 2016. 9월 기획행사 추진
- 2016. 10~12월 기획전시 추진

사업비 : 16,000천원(시설비 8,000천원, 행사운영비 5,000천원, 리플렛 등 3,000천원)

5. 인권백서 발간

추진근거 : 인권조례 제15조(2년마다 발간, 제1호 : 2014년 4월 발간)

발간내용 : 해당기간(2014년~2015년) 추진하였던 인권정책 관련 사업

추진일정

- 2016. 1월~2월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16. 3월~5월 : 원고작성 및 편집
- 2016. 6월 : 발간

사업비 : 5,000천원

6. 인권도시협의회 구성

추진배경

-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 채택, 인권도시 국제적, 국내적으로 중요한 인권의제
- 지방 분권,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제도로서 제도의 형식화 넘어 실질적 정착 유도
- 지방 정부 간 경험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제도 정착 필요

추진방향

- 도시(행정)에 대한 인권적 접근 공동 개발 및 공무원 인권교육 공동 개발
- 지방정부의 소수자 보호 정책과 전략 개발
- 중앙정부에 대해 도시(지방정부)의 권리 공동 대응

□ 추진내용

- 인권도시협의회 구성 사전 사업 : 워크숍, 인권전담 부서 릴레이 간담회, 토론회 등

□ 추진일정

- 2016. 1월~2월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16. 3월~5월 : 자치구 담당자 실무 협의
- 2016. 6월~7월 : 서울시 인권도시협의회(가칭) 발족 기념 포럼 개최
- 2016. 하반기 : 인권도시협의회 결성 추진

7.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 추진

□ 추진배경

-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실시 이후 후속사업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
- 지역사회 내 청소년 노동인권문제 관심 증대 및 노동인권교육 필요성 확산

□ 추진목표

-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업에서 제기된 지자체 차원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및 지원 방안 마련
-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학교와 노동현장에 밀착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개선 활동 기반 조성
- 청소년, 학부모, 교사, 관련 종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보호의 중요성과 노동인권의식 제고 및 노동인권교육 확대

□ 추진방향

-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성북구 민관협의체 구성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및 전담기구 설치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 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 실시

- 학부모, 교사,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 청소년 노동 또래상담사 양성을 위한 노동인권 프로그램 운영

○ 성북구-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 협약 체결

- 지방정부 차원에서 학교 및 지역, 노동 현장에 밀착하여 실질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모델 창출

- 노동인권교육 우선 지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동기획 사업 추진

□ 추진내용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성북구 민관협의체」 구성 추진

- 명 칭 :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협의회

- 구 성 : 공공기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청소년 기관, 전문가(노동, 교육, 인권), 구청 등 20명 이내

- 운영주기 : 분기별 1회(중요 안전 발생시 수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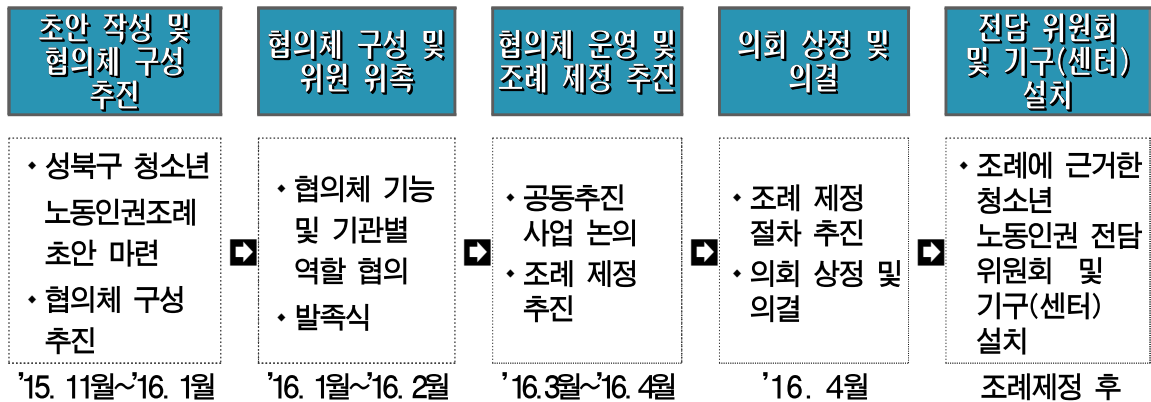
- 주요기능 :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 추진, 근로환경 개선, 노동인권침해 예방 및 모범사례 발굴, 홍보 등 공동추진, 지역사회 내 청소년노동 인권보장에 관한 논의 활성화 및 대안정책 도출

○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 및 전담 기구(센터) 설치 추진

- 조례목적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

- 주요내용 : 청소년에게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단계별 추진 체계, 청소년 일자리 마련 기관 및 기업 지원 체계, 청소년 일자리 유관기관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지원 체계, 지역사회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주체별 노동인권 교육과 홍보 체계

- 조례 제정 절차



2. 인권교육 활성화

□ 추진지표

추진지표명	목표치		
	2016년	2017년	2018년
직원인권교육	2	2	2
주민인권학교	2	2	2
복지시설종사자·사회적경제주체인권교육	2	2	2
교사인권캠프	1	1	1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확대	1	1	1

□ 세부추진계획

1. 직원인권교육 실시

○ 집중그룹을 위한 참여형 인권교육 실시

- 일정 : 2016. 상반기

- 대상 :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보건, 재건축, 재개발 등 사회적 약자 및 인권 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은 부서 및 관련된 업무 담당자

- 교육방법

- 전문강사 초빙 인권강의로 소그룹의 참여형 및 토론식 강의 진행
- 1회당 참여 인원은 줄이고 교육 횟수를 늘려서 직무 연관성 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인권 직무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직원인권아카데미

- 일 정 : 2016. 하반기
- 대 상 : 전직원
- 교육방법 : 전문강사 초빙 인권강의
- 교육내용 : 인권행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지속적 인권의식 제고(함양) 교육

○ 문화가 있는 인권교육 실시

- 일 정 : 2016. 연중 수시 진행
- 대 상 : 전직원
- 추진방법 : 인권 영화 관람과 직원인권교육 연계 추진
- 관람영화 : 인권 관련 영화
- 사 업 비 : 비예산 사업(행정지원과 예산활용)

○ 사이버 인권교육

- 일 정 : 2016. 2월~12월(매월 개강, 개별 신청)
- 대 상 : 전직원
- 교육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원격강의 방식으로 전 직원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인권의 이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노인관련 시설에서 노인과 인권, 행정과 인권, 장애예방과정 등

※ 사회복지 교육 의무 이수 연계 진행

2. 복지시설종사자 · 사회적경제 주체 인권교육 실시

- 일 정 : 2016. 4월, 9월(연 2회, 회당 2강)
- 대 상 : 관내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종사자

- 교육인원 : 회차별 5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토론형식 교육
- 교육내용 : 인권의 기본 개념, 용어, 역사 등 기본적 소양 교육, 현장에서
의 인권 문제 나누고 해결하기, 인권옹호자로서의 권리 찾기
등
- 사 업 비 : 2,200천원

3. 주민인권학교

- 일 정 : 2016. 4월, 10월(연 2회, 회당 4강)
- 대 상 :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교육인원 : 회차별 50명
- 교육방법 : 인권전문가 및 교수진 강의, 토론식, 인권영화관람, 인권기행
등 다양한 방식 고려
- 교육내용 : 인권의 기본 개념, 인권이슈 등
- 사후조치 : 인권학교 수료생 모임 등 추진
- 사 업 비 : 10,000천원

4. 교사인권캠프

- 일 정 : 2016. 6월
- 대 상 : 관내 초등, 중, 고 교사 40명
- 추진방법 : 교사인권캠프 기획단 구성 및 기획, 직무연수 방안 모색,
후속모임 실시
- 사 업 비 : 10,000천원(혁신교육지구 사업 일환 교육청소년과 협조)

5.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확대

○ 청소년 노동인권 특강

- 일 정 : 2016. 4월~6월
- 대 상 : 관내 학부모 및 청소년, 교사, 고용주 대상별 교육
- 추진방법 : 청소년 노동인권 기획자문회의 자문, 직접 주최
- 회 수 : 연2회(1회당 2강)
- 사 업 비 : 1,200천원

○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 교육 과정

- 일 정 : 2016. 4월~11월
- 대 상 : 15세 이상 20세미만 청소년
- 추진방법 : 청소년 노동인권 기획자문회의 자문, 민간위탁
- 회 수 : 연2회(1회당 8강)
- 사 업 비 : 7,000천원

6.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 대 상 : 초등·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 지원방법 : 인권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 신청을 받아 희망학교(1개 학년 전체 학급) 선정 후 교육일정, 프로그램 주제, 강사진 등 학교와 조율 후 강사파견, 학급별 교육 진행(교육경비보조금, 강사료 지원)

○ 교육내용 : 참여형, 역할극, OX 퀴즈 등 학교별 맞춤교육 실시(학급담임과 협의)

○ 프로그램 (예시)

구 분	1교시	2교시	
학습내용 1	마음열기/감수성/○×퀴즈	인권교육	
진행방법	몸풀기 마음열기 - 인권지도 그리기 보드판에 스티커 붙이기 - 인권 퀴즈	인권의 개념소개(PPT) 모둠별 발표-인권으로 다시 보기	
학습내용 2	동화로 보는 인권	소수자 인권	
진행방법	동화 속 인권이야기- 조별토론-발표 동영상, 퀴즈풀기, 사례 설명	인권의 개념 소개(PPT) 인권으로 다시 쓰는 동화-조별발표	
학습내용 3	몸풀기 마음열기/동그라미의 비밀	노동인권○× 퀴즈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진행방법	직업카드 니열-모둠별노동자, 비노동자구분 토의-모둠별발표 및 집단 토의	모둠별 물제풀기 노동법 상식 구제방안 청소년노동영상보기	사례제시 모둠별토의, 질문대응 대응방안 토의

- 사 업 비 : 11,200천원(혁신교육지구 사업 일환 교육청소년과, 강사료 : 10개학교×1개학년(8학급)×2시간×70천원)
- ※ 서울노동권익센터 지원 추진(지원학교 수 확대 추진)

7. 청소년 인권캠프 실시

- 대 상 : 청소년(15세이상 20세미만) 40명
- 운영방법 : 구청(인권센터)이 인권전문가 및 교육전문가, 청소년 등으로 청소년인권캠프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추진내용 : 기획단 구성(2월), 계약체결, 인권캠프 실시 및 후속모임 추진
- 사 업 비 : 8,000천원(혁신교육지구 사업 일환 교육청소년과, 행사운영비)

3. 인권영향평가 내실화

□ 추진지표

추진지표명	목표치		
	2016년	2017년	2018년
대상정책 인권영향평가	30	30	30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	2	2	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인권영향평가 실시	1	1	1
2017년 세출예산(안) 인권영향평가 실시	1	1	1

□ 세부추진계획

1. 대상정책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일 시 : 연중 실시
- 대 상
 -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평가방법 : 평가서에 의거 자체 평가 후 인권위원회 심의
- 사후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2. 재개발 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입

- 실행 TFT 구성 : 인권센터, 주거정비과, 해당 동 주민센터, 연구자
- 실행 TFT 협의 사항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기자 회견 등
 - 시행 시뮬레이션
 - 안정적 시행을 위한 사전 조치 및 가이드라인
 - 소요 예산
- 대 상 : 사업시행인가(8지역), 관리처분인가(6지역) 지역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	사업시행	관리처분	전체
2	12	10	8	6	38

성북구에서 사업 추진 중인 구역의 사업추진단계

3.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일 시 : 연중 실시
- 대 상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1,000㎡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
- 방 법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자문으로 사업시행 단계별 실시

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일 시 : 2016년 4월 이전
- 방 법 : 인권영향평가표 의거 평가단이 투표소 현장실사하여 모니터링 및의견 제시, 이행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 인권센터 시민위원 사전 점검 실시 (2015.11월)

5. 인권영향평가 워크숍 실시

- 일 시 : 2016년 하반기 중
- 대 상 : 인권영향평가단, 외부 전문가, 인권센터 등
- 방 법 : 평가 시행 과정에서 수집된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
- 사후조치 : 수집된 자료를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개

6. 2017년 세출예산(안)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일 시 : 2016. 11월
- 대 상 : 2017년 세출예산(안)의 구비 3억 이상 사업
- 방 법 : 평가 및 검토 후 구의회 및 인권위원회에 평가서 제출
- 사후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권고

V. 2016년 사업 추진일정

로드맵 사업명	1월~3월	4월~6월	7월~8월	9월~12월
진행도	%	%	%	%
인권센터 기능 강화	25	50	75	100
인권위원회 안정적 운영	25	50	75	100
인권실태조사	25	50	75	100
인권전시관 조성	25	50	75	100
인권백서	50	100		
인권도시협의회구성	25	50	75	100
청소년노동인권조례제정추진	50	100		
직원인권교육	25	50	75	100
복지시설종사자사회적 경제주체인권교육		50		100
주민인권학교	25	50	75	100
교사인권캠프	25	75	100	
청소년노동인권교육	25	50	75	100
대상정책 인권영향평가	25	50	75	100
재개발 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입	25	50	75	100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	25	50	75	100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인권영향평가 실시		100		
인권영향평가 워크숍 실시			100	
2017년 세출예산(안) 인권영향평가 실시				100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50대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50대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50대 주민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신건강검진 중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1회에 한하여”를 “1년 단위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연임되는 경우 이사장은 상임이사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면되어 임기(연임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임원 및 임기) ① ~ ⑥ (생략)</p> <p>⑦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제8조(임원 및 임기)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u>1년</u> 단위로 ----- . <u>다만, 상임이사가 연임되는 경우 이사회장은 상임이사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3-02 조례 제9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실행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4.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5.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도서관운영 및 관리
7. 아리랑시네센터 운영 및 영상미디어 사업

[붙임자료 :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 지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임원 및 임기)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 ④ 이사와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선임직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⑦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재단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

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감독·보고·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붙임자료 : 조례안]

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